

Global Non Tariff Barriers Issue

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와 대만, 트랜스 지방 사용 제한 조치 발표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트랜스 지방 함유량 제한 조치 발표

지난 5월 16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은 지방, 오일, 지방 유제(Fats, Oils and Fat Emulsions)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식용유 내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5 wt%(% by weight)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킴. 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2023년까지 트랜스 지방 퇴출' 발표에 따른 조치로 해석됨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경화(partially hydrogenated) 및 탈납(winterized)된 대두유, 식물성 유지 및 혼합유지 스프레드 등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은 5wt% 이하로 제한하며, 본 개정안 최종 통지 일자 2년 후부터는 2wt% 이하로 제한될 예정임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현재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트랜스 지방 최대함량 제한 수치를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각 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대만, 7월부터 불완전경화유 사용 금지 규제 시행

대만 위생복지부는 이미 2016년 4월 22일 '식용경화유사용제한(食用氫化油之使用限制)' 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해당 법안의 시행일을 한 달 앞 둔 시점에서 WHO의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 발표로 인해 해당 법안 내용이 재차 강조되고 있음

Global Non Tariff Barriers Issue

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식용경화유는 식물성 유지에 수소 첨가 반응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크게 완전경화유(完全氫化油)와 불완전경화유(不完全氫化油)로 나뉨. 완전경화유는 요오드값이 4이하인 것으로 식품에 적합하지만 불완전경화유는 요오드값이 4보다 크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하기 부적합함. 이러한 불완전경화유에 수소 첨가 반응이 더해질 경우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

이에 대만 위생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식품에 불완전경화유 사용 금지 규정을 제정함.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1일(식품 제조 일자 기준)부로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안전관리법 제 48조에 의거, 3만~3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각 국가별 트랜스 지방 제한 조치 동향 예의 주시해야...

세계보건기구(WHO)의 '트랜스 지방 퇴출' 운동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며 관련 제한 조치 법안을 발표하고 있음. 인도의 트랜스 지방 관련 규정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므로 본 개정안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함. 한편 대만은 오는 7월 1일(식품 제조 일자 기준)부로 식용경화유사용제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만 수출업체는 즉각적으로 해당 규정 내용을 준수하여 식품수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지방, 오일, 지방유제 관련 개정안공지

<http://www.fssai.gov.in/home/fss-legislation/notice-for-comments.html>

▶▶ 대만 위생복지부, 식용경화유사용제한(食用氫化油之使用限制)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9817&chk=1f69c105-d75f-4ab4-a604-89f932748359>

출처

Notice Calling for suggestions, views, comments etc from stakeholders on the draft notification relating to Fats, Oils and Fat Emulsions, FSSAI, 16.05.2018

대만 위생복지부, 식용경화유사용제한, 22.04.2016